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5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5월 12일

3. 제안이유

가. 자치단체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조례를 별도 제정 운영하고

나.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중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명 개칭 및 조문을 정비

4. 주요골자

가. 자치단체 사무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위탁(안 제4조)

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 검토, 적정기관을 선정 (안 제5조)

다. 수탁기관을 심의·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라.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 (안 제7조)
- 마.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 (안 제8조)
- 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 (안 제10조)
- 사.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 (안 제12조)
- 아.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금지 (안 제14조)
- 자. 부칙상 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로 개칭 및 조문 정비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 자치단체사무를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에 따른 각 사무별 수탁자 선정기준, 응모 대상 없을시 대처방법 및 임시로 운영하게 될 위탁사무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방법과 협약체결에 따른 각 대상사무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그동안 위탁한 21개 사무중
 - 충북학사 등 5개의 시설분야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 사무분야중 대한무역진흥공사충북무역관에 위탁한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근무” 성과와

- 향후 위탁하고자 하는 “자연학습시설운영”위탁계획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